##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08 발의연월일: 2024. 8. 9.

발 의 자:김도읍・김예지・장동혁

구자근 • 권영진 • 서지영

인요한 • 박정훈 • 조지연

김석기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민법」상 재산에 해당되고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그러나 반려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사실상 가족에 가깝게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에서 반려동물을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의 반려동 물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95조제17호 신설).

법률 제 호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5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의 반려동물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  |  |
|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                    |  |  |
| 못한다.               |                    |  |  |
| 1. ~ 16. (생 략)     | 1. ~ 16. (현행과 같음)  |  |  |
| <u>&lt;신 설&gt;</u> | 17.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 |  |  |
|                    | 의 반려동물             |  |  |